

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1. 12. 27 규칙 제 660호
일부개정 2016. 12. 12 규칙 제 862호
일부개정 2017. 11. 6 규칙 제 890호
일부개정 2019. 8. 7 규칙 제 973호
일부개정 2022. 7. 18 규칙 제1080호(회계관리에 관한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신청 및 허가) ① 「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사전에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(별지 제2호서식)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(별지 제4호서식)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8. 7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(변경)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개인(연습)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.

④ 방송중계 시설 및 기타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중계신청서(별지 제5호서식) 및 기타부속설비 사용신청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(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) 조례 제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“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
2.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터

3. 남사스포츠센터

4. 용인시국민체육센터

[본조신설 2019. 8. 7]

제3조(사용료의 납부·반환) 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고지서로 매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12, 2019. 8. 7, 2022. 7. 18>

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(별지 제9호서식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제4조(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)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(초대권을 포함하며,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2분의 1 해당액으로 본다)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사용료와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(프로경기는 100분의 15)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 다만, 관람권 수입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 8. 7>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(마당놀이, 음악회, 콘서트 등을 말한다)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. <개정 2019. 8. 7>

③ 제2항에 따라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 관람권을 온라인 판매할 경우 관람권 액면 최고액의 2,000석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8. 7>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⑤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40퍼센트 이내로 하고 40퍼센트 초과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.

⑥ 전 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

예에 의한다.

제5조(폐기물처리 비용) ① 삭제 <2016. 12. 12>

② 주경기장(축구장)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.

제6조(예매표)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판매액을 주최 측에 인도한다.

제7조(초대권 발행)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검인을 받고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제8조(관람권의 종류)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12. 12>

1. 특별관람권(초대권, 무료관람권 포함)
2. 일반관람권
3. 군인 및 학생관람권
4. 단체관람권(일반 또는 군경, 학생)
5. 경로우대권
6. 어린이관람권(초등학생)

제9조(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) ① 제4조에 따른 관람권은 관람권 검인 신청서(별지 제11호서식)를 시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,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고,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(별지 제10호서식)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(별지 제12호서식)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제10조(예치금) 제4조제4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,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 삭제 <2016. 12. 12>

제12조(입장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
2. 술에 만취한 사람
3.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
4.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13조(유·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) 조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·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는 시민 및 체육동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·무료 운영 개시 30일전에 공고한다.

제14조(출입증 발급) ① 시장은 출입증(별지 제13호서식)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한다.

1.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2.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(별지 제14호서식)을 갖춰 놓고, 발급상황을 기록·정리하여야 한다.

제15조 삭제 <2017. 11. 6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2. 12 규칙 제86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1. 6 규칙 제89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8. 7 규칙 제97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7. 18 규칙 제1080호,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「용인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21조”로 한다.

⑦ 부터 ⑨ 까지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9. 8. 7>

<앞 면>

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

신 청 인	주 소			
	성 명		전화번호	
	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사용목적				
사용시설명 및 사용내역			중계방송	
			기 타	
경기행사명				
사용기간	주간	년 월 일	시부터	년 월 일 시까지
	야간	년 월 일	시부터	년 월 일 시까지
임원또는 지도요원	임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인	지도요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인 계 <input type="checkbox"/> 인
	임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인	방송(촬영)	<input type="checkbox"/> 인 요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인
관 랐 권	특 별 관 랐 권	원 매	단체군경관람권	원 매
	일 반 관 랐 권	원 매	초 대 권	원 매
	군경학생관람권	원 매	예 매 처	
	단체일반관람권	원 매	비 고	
기 타				
사 용 료	원 납부 년월일			
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.				
년 월 일 신청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인				
용 인 시 장 귀하				
첨부 : 1. 사용(사업)계획서 1부 2.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				
※ <뒷 면>의 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]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< 뒷 면 >

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】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

신청인	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	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
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	성명(법인·단체명), 주소, 전화번호,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 등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경과후 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연도 12.31.까지
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		
년 월 일		
신청인 :		(인)
용인시장 귀하		

[별지 제2호서식]

체육시설 사용 허가서

허 가 번 호	주 소			
	성명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 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		전 화 번 호	
	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사 용 구 분				
사용시 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				
경기(행사명)				
사 용 기 간				
관람권 또는 기 타				
허 가 조 건				
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.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				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9. 8. 7>

<앞 면>

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

허가번호	주 소		
	성명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 인 단체 명 과 그 대표자명)	전화번호	
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허가사항	허가내용		변경신청내용
사용구분			
사용시설명 또는 사업내용			
경기(행사)명			
사용기간			
관람권 또는 기 타			
허가조건			
<p>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인</p> <p>용 인 시 장 귀하</p> <p>첨부 : 1. 사용(사업)변경 계획서 1부 2.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</p> <p>※ <뒷 면>의 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]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6. 12. 12>

라 디 오 방송중계 신청서 텔 레 비 전			
경 기 명			
경 기 일 시			
중 계 사 용 료			
전 기 사 용 료		광 고 주 명	
<p>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방송국명 : 방송국 성 명 :) (생년월일 :)</p> <p>용 인 시 장 귀하</p>			

[별지 제6호서식]

기타 부속설비 사용신청서

경기(행사)명		담당자	팀 장	결 재
대회기간				
행사주체				

구 분	사용내역	단 위	단 가	사 용 료	납 부 일	비 고
계						단위: 원
호 실		1일 1실				
농구골대		1일 1조				
발 언 대		1일 1개				
의전용의자		1일 1개				
접 의 자		1일 1개				
탁 자		1일 1개				
줄다리기		1일 1개				

기타 부속설비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단체명
대표자

인

용 인 시 장 귀하

[별지 제8호서식] 삭제 <2016. 12. 12>

[별지 제10호서식]

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

대 회 명 :

대회기간 : 년 월 일 부터
 년 월 일 까지 (일간)

종 별	발 행 수	관 매 수	판매되지 않은 수	비 고

위와 같이 확인 인수합니다.

 년 월 일

확인자명

인

용 인 시 장 귀하

[별지 제11호서식]

대회관람권 검인 신청서

			결 재

구 분	매 수	금 액	예매요구량	비 고
특별관람권	매			
일반관람권	매			
군경및학생권	매			
단체관람권	매			
경로우대권	매			
어린이관람권	매			
초 대 권	매			
기 타	매			

위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단체명

대표자

인

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12호서식]

관람권 판매보고

년 월 일 관람권 판매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종 별	당일 판매분		일까지 판매분		계		당 일 시수입금	납입 일시	시수입 누계액
	매수	금액	매수	금액	매수	금액			

년 월 일

체육시설 사용자 대표

인

용 인 시 장 귀하

[별지 제13호서식]

(체육시설명)	
제 호	출 입 증
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width: 150px; height: 100px; margin: 0 auto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“사진”</div>	
년 월 일	
용 인 시 장 인 인	
주 의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본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2. 본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3. 본 증서 소지자는 관람권 없이 출입할 수 있다.4. 본 증서는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	

[별지 제14호서식]

출입증 발급대장

번호	소속	성명	발행년월일	유효기간	회수년월일	비고